

제 600 호

1977.3.2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
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5444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156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건설단설치조례
폐지조례..... 3

제 1157 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..... 3

◎ 규 칙

제 1684 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
개정규칙..... 5

◎ 고 시

제 79 호 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일부변경및
지적승인..... 7

제 80 호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 결정및
지적승인..... 8

제 81 호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변경결정및
지적승인..... 9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계	보도계장	공보계장	문화계장	공보	공람
	홍	홍	홍	원	일

1487

제 82 호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일부변경 승인.....	9
제 83 호	도시계획시주차장 정비지구결정 ,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.....	10
제 85 호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 , 변경 , 폐지 결정 및 지적승인.....	12
제 86 호	도시계획시설 (도로) 결정및 지적승인.....	13
제 87 호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	14
제 88 호	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.....	15
제 89 호	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.....	15
제 90 호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	34
◎ 공 고		
제 57 호	공인개각 사용공고.....	34
제 61 호	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.....	35
제 62 호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...	36
◎ 사 병	40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서울건설단 설치조례 폐지 조례틀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**인**

1977년 3월 25일

○ 서울특별시조례제 1156호

서울특별시새서울건설단 설치조례 폐지조례

서울특별시 새서울 건설단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틀 이에 공포 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**인**

1977년 3월 29일

○ 서울특별시조례제 1157호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 2 호 급수사용료 요율표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(1) (적용) 이 조례는 공포한날 이후의 급수사용량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(2) (격월검침시의 적용 누락) 이 조례 공포후에 격월제로 인수가 점검을 한 수요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인상요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다만, 원단위 밑은 절사한다.

1. 1977년 5월에 점검한 경우 : 이조례에 의한 인상부분의 4분의 1 감액적용

2. 동년 6월에 점검한 경우 : 이 조례에 의한 인상부분의 4분의 1 증액적용

별표제 2 호 급수 사용료 요율표

구 분 용도별	1 전 1 개월 기본요금		초 과 사 용 료	
	기본수량(㎥)	기본요금	사용구분(㎥)	㎥당원가(원)
제 1 종	30	3,000	31 이상	170
제 2 종	20	1,200	21 이상	90
제 3 종	15	350	16 - 30	40
			31 - 50	70
			51 이상	100
제 4 종	500	90,000	501 이상	280
제 5 종	500	22,500	501 이상	55
제 6 종	사용수량	1 ㎥당 65원		
제 7 종	100	5,000	101 이상	50
제 8 종	사용수량	1 ㎥당 115원		

기 타 시설소화전의 기본요금은 월 500원 (1년분을 1회에 징수할 수 있다) 으로 하고 연습사용료는 제 6 종 요율에 의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7년 3월 29일

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684호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
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0 조, 제 21 조, 제 22 조, 제 23 조, 제 24 조, 제 25 조 및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20 조 (위탁수수료 산정기준) 조례 제 4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의 범위안에서 양수기 점검은 전당 난가를, 고지서 송달은 매당 단가로 산정한다.

- 1. 인건비 : 공무원 5급율류 1호봉
- 2. 부대경비 : 양수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필수경비
- 3. 제장비 :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의함.

4. 1인당 양수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능력 :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의 업무능력 진단결과

제 21 조 (수탁업무의 수행) ① 수탁법인은 양수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(독촉강포함) 업무를 조례, 동시행규칙, 과징사무처리규정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다만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납금의 독촉, 수요가의 요망사항 보고 및 기타 부내업무는 무료로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수탁법인의 인원관리) ① 수탁법인은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인원을 고용관리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법인은 인원배치 및 이동 상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수탁법인의 인원에 대한 개별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수탁법인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

업무수행상 부적격자라고 인정하여 해고불 요구할 때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수탁법인의 책임) 수탁업무수행중 발생하는 보안상 책임,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, 안전사고 및 노사분규에 대하여는 수탁법인의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 24 조 (수탁법인의 금지행위) ① 수탁법인은 제 3 자의 선전 및 광고불구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불하여서는 안된다.

② 수탁법인은 수탁업무를 제 3 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전입 또는 양도 할 수 없다.

제 25 조 (위탁수수료의 지급) 위탁수수료는 월별 업무처리 전수불구청장이 검수하여 월별로 정산지급한다.

제 26 조 (권한의 위임) 조례 제 46 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다 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 한다.

1. 조례 제 5 조에 의한 공용 급수 장치 설치 및 사용허가
2. 조례 제 6 조에 의한 신고 및 급수중단처분
3. 조례 제 12 조 제 1 항의 상수도 시공영업허가
4. 조례 제 17 조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
5. 조례 제 23 조의 양수기의 시험
6. 조례 제 24 조 제 2 항의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임
7. 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시설소화전의 연습 사용허가
8. 조례 제 27 조의 급수중지 및 폐전
9. 조례 제 28 조의 급수사용료 징수
10. 조례 제 28 조의 2 의 가압료 징수
11. 조례 제 30 조의 급수 사용료의 조정
12. 조례 제 31 조의 사용수량의 인정
13. 조례 제 36 조의 일시 급수사용료 징수

<p>14. 조례 제 39 조의 정수 처분 15. 조례 제 41 조의 과태료 처분 16. 조례 제 43 조의 이의 신청의 결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고 시</p> </div> 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9 호 도시계획시설 (시장)결정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(시장)을 다음과 같이 결정 일부 변경</p>	<p>결정 및 지적승인 하연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면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년 3월 26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			
<p>가. 시장 결정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</p>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양재시장	강남구 양재동 18-1 일대	308.5 ^평	
	남성상가시장	가리봉동 89-3	556	
	장안평아파트상가시장	장안평지구 86.87 부록	600	
	대우시장	중구 양동 286 일대	520	
기 정 변 경	역촌시장	서대문구 구산동 25-1	102	
		서대문구 구산동 25-60 일대	306	증 204.8 ^평
<p>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</p>				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80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
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
(도로)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
지적승인 하던기 도시계획법 제
12조 및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

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
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과의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
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
인에게 보입니다.

1977년 3월 26일

서울특별시 장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소로	2		6 ㎞	80 ㎞	수유동 605-132	수유동 605-185 (천)	
기정	"	2		8 ㎞	"	번동 78-26	번동 617 (구)	
변경	"	2		8 ㎞	"	"	"	위치일 부변경
기정	"	3		6 ㎞	100 ㎞	중1 - 47 수유동 72-134	수유동 570-31	
변경	"	3		"	"	"	"	위치일 부변경
기정	"	3		"	380 ㎞	쌍문동 414-186	쌍문동 420-3	
변경	"	3		"	"	"	"	위치일 부변경
기정	"	3		3 ㎞	30 ㎞	중림동 46-8	중림동 46-5	
변경	"	3		"	"	"	"	위치일 부변경
신설	"	2		8 ㎞	90 ㎞	양명동 3 가 65-3	양명동 3 가 65-3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끝.

<p>○ 서울특별시고시제 81 호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얏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와 행정 권한 위임</p>		<p>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>1977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</p>		
<p>가.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</p>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(기정)	운동장 (정구장)	동대문구 남우동 123 외 2필지	3,944㎡ (1,193 평)	
(변경)	운동장 (정구장)	동대문구 망우동 123 외 5필지	8,346.5㎡ (2,676 평)	추가 4,902.5㎡ (1,483 평)
<p>※ 별첨 도면 생략.</p>				
<p>○ 서울특별시고시제 82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일부 변경 승인</p> <p>1. 건설부 고시제 198 호(71.4.7)로 시설결정 및 건설부 고시제 411 호(71.7.7)로 지적 승인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일부 변경하얏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과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</p>		<p>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>197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</p>		

○ 지적 일부 변경조서

구분	등급	번호	폭원	인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광로	19	40m	40m	가리봉동 84-13	가리봉동 87-6	
변경	광로 9 호지적 일부 변경 (약 4)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노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83 호

도시계획 주차장 정비지구 결정,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주차장 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 및 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의 행정
가. 도시계획 주차장 정비지구 결정,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

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년 3월 28일

서울특별시 장

순위	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1	도심부 지구	중로, 중, 서대문, 성북 동대문, 성동, 용산구 일부	6,728,000	증 9,687,500	16,415,500	추 가
2	청량리 지구	동대문구 청량리 동 일부	407,000	감 407,000	0	도심지구 에 통합
3	미 아 지구	도봉구 미아동 일부 성북구 길음, 돈암, 종암, 하월곡동 일부	-	증 614,500	614,500	신 설
4	수 유 지구	도봉구 수유동 일부	-	증 243,700	243,700	신 설

순위	지구명	위	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5	망우지구	동대문구상봉동일부		-	증 212,000	212,000	신설
6	천호지구	강남구천호, 풍납, 성내, 길동 일부		-	증 587,500	587,500	신설
7	영동지구	강남구압구정, 신사, 서초, 역삼학, 청담, 삼성, 도곡, 대치동 일부	808,000	증	9,396,700	10,204,700	추가
8	"	청담 - 신사 - 역삼 - 삼성 노선양측 12 ㎡	225,600	감	225,600		영동지구에 포함
9	이수지구	관악구 동작동 일부		-	증 75,250	75,250	신설
10	사당지구	관악구사당동, 방배동일부		-	증 318,700	318,700	"
11	신림지구	관악구신림동, 봉천동일부		-	증 837,500	837,500	"
12	여의지구	영등포구여의도동일부	1,767,000	증	57,600	1,824,600	추가
13	영등포지구	영등포구당산, 영등포, 문래, 신길, 양명동일부	960,000	증	4,918,750	5,878,750	"
14	오류지구	영등포구오류동 일부		-	증 200,000	200,000	신설
15	화곡지구	영등포구화곡동, 등촌동, 신월동일부		-	증 612,500	612,500	"
16	신촌지구	서대문구북아현, 대현, 장천, 마포구동교, 서교, 노고산, 대흥, 염리, 공덕, 신공덕, 용산구효창, 원효 1가일부		-	증 1,363,140	1,363,140	"
17	용산지구	용산구원효 1가문배, 갈현, 한강로 1가, 2가, 3가 일부		-	증 631,250	631,250	"
18	한남지구	용산구 한남동 일부		-	증 200,000	200,000	"
	계		10,895,600	증	29,323,990	40,219,590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5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신설, 변경,
폐지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(도로)을
다음과같이 신설결정, 일부변경, 폐
지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12조와 제 13조 및 행정권한
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 25조에

외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
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
에게 보입니다.

1977. 3. 29

서울특별시장

구분등급	류별	번호	폭 원	연 장	시 점	종 점	비고
기정	소로	3	6 m	130 m	서대문홍제동109-4	서대문홍제동105-103	
변경	"	3	6	130	"	"	일부 변경
기정	"	3	6	85	마포구공덕동426-18	마포구공덕동 257-2	
변경	"	2	8	85	"	"	일부 변경
신설	"	3	6	170	서대문봉원동 42-16	서대문봉원동 45번지	
폐지	"	3	6	60	마포구중동 30-30	마포구중동 29-4	
"	"	3	6	100	" 성산동 152-2	마포구성산동산 48-1	
"	"	3	6	20	마포구성산동산 48	" " 48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갈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
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(도로)을
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하였
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
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41 호
(77.3.16)의 권한위임 사항에

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과의 관할구청 직원봉쇄함에 비치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의 신청인
에게 보인다.

1977. 3. 29

서울특별시청

가.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 장	시 점	종 점	비 고
신설	소로	1류	10 ㉞	780 ㉞	가양동 27-19	가양동 159-1	신 설
"	"	2류	8 ㉞	250 ㉞	" 241-2	" 272-36	"
"	"	"	"	230 ㉞	" 249-1	" 270-3	"
"	"	"	"	200 ㉞	" 146-5	" 187-5	"
"	"	"	"	170 ㉞	" 146-27	" 154-6	"
"	"	3류	6 ㉞	100 ㉞	" 275-6	" 163-6	"
"	"	"	"	140 ㉞	" 8-2	" 14-24	"
"	"	"	"	210 ㉞	" 산 5	" 252	"
"	"	"	"	280 ㉞	" 194-1	" 145-1	"
"	"	"	"	98 ㉞	" 197-1	" 189-3	"
"	"	"	"	90 ㉞	" 148-2	" 151-1	"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7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61 호 (74.5.14)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산 9 - 1 의 3 필지
 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연세대학교 도서관신축
 3. 사업의종류 및 규모 : 19,337 ㎡ (5,859.7 평)
 4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
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
 - 가. 착수 년월일 : 사업 시행 허가일
 - 나. 준공 예정일
1979. 3. 19

6.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명세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권
서대문구신촌동	132의 1	대지	5,774 ㎡중 4,037.5 ㎡	학교법인연세대학교
"	132의 5	"	1,152 ㎡ 89.2 ㎡	"
"	산 9 의 1	임야	143,590 ㎡ 1,470.5 ㎡	"
"	132의 6	구거	330 ㎡ 262 ㎡	시유지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 호

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2 조 및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25 조에 의거

○ 시설결정조서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, 고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.

1977. 3. 30

서울특별시 장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주 차 장	외주로 1 가 209 및 미근동 83 일대	20,150	

※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은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89 호

주택개량위한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제 31 조 및 동법 제 12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 시 제 174 호 (76.11.2) 의 권한위 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한다.

2.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

택개량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3. 30

서울특별시 장

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관한 도시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조서: 관계도 면 표시와 같은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 량과의 관할구청 시민회에 보관

주택개발사업도시계획결정및일부변경

(1) 청량3구역(3-19)주택개발사업 도시계획 결정조서

가. 계획면적

위 치	면 적	비 고
동대문구 청량리동 61번지	17,200 [㎡] (5,203명)	

나. 토지이용계획

용 도 별	면 적	비 율	비 고
택 지	13,888 [㎡]	80 %	
도 로	3,312 [㎡]	20 %	
계	17,200 [㎡]	100 %	

다. 가로조서

노 선 명	시 점	종 점	폭	연 장	비 고
소 로 3-1	199-95	지 구 계	6m	110m	
" 3-2	소 3-1	소 3-3	6	150	
" 3-3	"	61-447	6	150	
" 4-1	"	소 3-2	4	35	
" 4-2	소 3-2	지 구 계	4	95	
" 4-3	지 구 계	소 3-3	4	70	

(2) 면목제 1구역 (3 - 23) 주택개발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																							
가. 계획면적																							
위					치		면		적														
									비														
									고														
동해문구 면목동산 78번지일대					23,293 ㎡																		
					(7,046명)																		
나. 토지이용계획																							
용		도		별		당		초		변		경		비		고							
						면												적		비		율	
토		지		도		도		로		계		23,293		100		100							
																		17,246 ㎡		76.2%		16,117 ㎡	
도		로		로		로		로		로		5,547		23.8		20.5							
																		5,547		23.8		5,176	
계		계		계		계		계		계		23,293		100		100							
																		23,293		100		23,293	
다. 가로변경조서																							
노		선		명		변				경				비		고							
						전		후		시		점						폭		연			
소		3-3		소		3-4		지		구		6		31.6		=		=		폐지소 4-3 변경			
																						지	
소		3-4		소		3-5		지		구		6		3-47		=		6		42		선	
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목	연장	시 점	종 점	목	연장	
소로 4-1	소3-4	지구계	4	57.8	소3-4	6	4	58	선형일부변경
소 4-2	지구계	"	4	36.7	"	6	4	126	연 장
소 4-3					"	6	4	31.6	소 3-3 폐지후
소 4-4					대3-4	소3-4	4	44	변경신설
소 4-5					소3-2	소3-2	4	120	신 설

(3) 면적제 2구역 (3 - 26) 주택개량제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
가. 계획면적

위 치	면 적	비 고
동대문구 면목 1동 산 72 번지 일대	13,878 ㎡ (4,198 명)	

나. 토지이용계획

용 도 별	당 초		변 경		비 고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
택 지	9,204 ㎡	67 %	8,262 ㎡	60 %	
도 로	4,674 "	33 %	5,616 "	40 %	
계	13,878 "	100 %	13,878 "	100 %	

다. 가로변경조서

노선명	변경전				변경후				비고
	시점	종점	폭	연장	시점	종점	폭	연장	
소4-1	대3-47	지구계	4m	50m	대3-47	소4-2	4m	47m	상각변경
소4-2					대3-47	지구계	4	75	신설
소4-3					"	소3-3	4	65	"
소4-4					"	소4-3	4	85	"

(4) 금호제1구역(4-6) 주택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
가. 계획면적

위 치	면 적	비 고
금호동산 37 } 일대 행당동산 30 }	163,697㎡ (49,518명)	

나. 토지이용계획

용도별	당 소		변 경		비 고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
택 지	125,321㎡	77%	104,897㎡	64%	
도 로	19,566㎡	12%	7,840㎡	5%	
녹 지	18,810㎡	11%	50,960㎡	31%	
계	163,697㎡	100%	163,697㎡	100%	

다. 녹지변경조서									
시설명	위 치			당초면적	변 경		변경후면적		비 고
녹 지	급호동산 7-13	} 일대	18,810㎡	증 40,830㎡			50,960㎡		
	행당동산 30			감 8,680㎡					
라. 가로변경조서									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폭	연 장	시 점	종 점	폭	연장	
소2-1	중 12	중 1	3m	906.3m			m	m	폐 지
소3-2	중 18	중 24	6	352	소3-1	소3-3	6	21.3	녹지로일부폐지
소3-3	중 31	중 41	6	336	소3-2	소4-1	6	310	노선일부변경
소3-5	중 65	중 64	6	352.9					소4-14로변경 일부폐지
소3-6	소3-3	지구제	6	90					녹지로폐지
소3-8					소3-4	대3-26	6	260	신 설
소4-1	중 59	중 56	4	120.4					녹지로폐지
소4-3	중 69	중 68	4	51.6					폐 지
소4-4	소 37	중 54	4	142					"
소4-5	소 48	중 36	4	55					"
소4-6	중 49	중 53	4	202					"
소4-9	중 28	중 5	4	135					"
소4-10	중 33	중 44	4	25					"
소4-11	중 32	중 42	4	78					"
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목	연 장	시 점	종 점	목	연 장	
소4-12	소2-1	지구제	4	48					되 지
소4-13	소4-12	"	4	90					,
소4-14					4-14	소3-26	4	180	소3-5지구및 일부변경
소4-15					소3-3	소3-3	4	188	신 선
<p>(5) 금호제3구역(4-9)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 가. 계획면적</p>									
위 치		면 적			비 고				
금호동산 29번지 일대		71,243㎡ (21,551병)							
<p>나. 토지이용계획</p>									
용 도 별	당 초		년 경		비 고				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				
택 지	45,467㎡	64%	18,645㎡	28%					
도 로	8,626	12	7,942	11.5					
녹 지	17,150	24	44,656	60.5					
계	71,243	100	71,243	100					

다. 녹지변경조서									
시설명	위 치			당초면적	변 경	변경후면적	비 고		
녹 지	신당산 34-5 금호산 14-12 금호산 14-2	일대		증 17,150㎡	증 27,506㎡	44,656㎡			
라. 가로변경조서									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중 점	폭	연 장	시 점	중 점	폭	연 장	
소 4-5	소 4-4	지구계	4m	105m			m	m	폐 지
소 4-7	소 4-8	"	4	66					"
(6) 금호계 4구역 (4-10) 주택개량재개발사업도시계획 일부변경									
가. 계획면적									
위 치		면 적			비 고				
금호동 산 15-1 산 15-4 일대		49,795㎡ (15,063평)							
나. 토지이용계획									
용 도 별	당 초		변 경		비 고				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				
택 지	35,226㎡	70.7%	31,825㎡	64%					
도 로	5,549	11.2	4,500	9					
녹 지	9,020	18.1	13,470	27					
계	49,795	100	49,795	100					

다. 녹지변경조서									
시설명	위 치	당초면적	변 경	변경후면적	비 고				
녹 지	금호산 15-1일대	9,020㎡	증 4,450㎡	13,470㎡					
라. 가로변경조서									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폭	연 장	시 점	종 점	폭	연 장	
소2-2	지구계	소2-1	8m	158m	지구계	소2-1	8m	178m	위치 변경 매 지 . 변경 도로에 연결
소3-2	소4-1	소3-1	6	43					
소4-1	소2-1	소2-1	4	225					
소4-2	"	소2-1	4	47	소2-1	소2-2	4	59	
(7) 우수제1구역(4-11)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 가. 계획면적									
위 치		면 적		비 고					
우수동 424번지일대		64,466㎡ (19,501명)							
나. 토지이용계획									
용 도 별	당 초		변 경		비 고				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				
매 지	49,444㎡	76.7	47,984㎡	74.8					
도 로	13,330㎡	20.7	14,406㎡	22					
녹 지	1,692㎡	2.6	2,076㎡	3.2					
계	64,466㎡	100	64,466㎡	100					
다. 녹지변경조서									
시설명	위 치	당초면적	변 경	변경후면적	비 고				
녹 지	우수동 424 ~ 39일대	1,692㎡	증 1,184㎡ 감 800	2,076㎡					

라. 가로변경조서

노선명	변경 전				변경 후				비고
	시점	종점	폭	연장	시점	종점	폭	연장	
소3-1	중3-1	소4-1	6m	102m	중3-1	소3-2	6m	171m	4-6 패지 확장
소4-6	중3-1	소3-2	4	69					소3-1로 확장

(8) 옥수 제2구역(4-12)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
가. 계획면적

위 치	면 적	비 고
옥수동 424 산5 번지일대	103,399㎡ (31,278평)	

나. 토지이용계획

용도별	당 초		변 경		비 고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
택 지	56,562㎡	54.7%	33,407㎡	32.3%	
도 로	11,280	10.9	7,324	7.1	
녹 지	35,557	34.4	62,668	60.6	
계	103,399	100	103,399	100	

다. 녹지변경조서

시설명	위 치	당초면적	변 경	변경후면적	비 고
녹 지	옥수동 424-210 424-758 424-114 일대	35,557㎡	27,111㎡	62,668㎡	

라. 가토변경조서
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중 점	폭	연 장	시 점	중 점	폭	연 장	
소3-2	소2-1	소2-1	6m	263.5m					배 지
소3-3	소2-1	지구제	6	370					,
소4-1	소3-3	,	4	40					,
소4-2	,	,	4	156	하저대	지구제	4	131	축 소
소4-3	소3-2	소3-1	4	83	소3-1	지구제	4	52	,

(9) 옥수 재5지역(4-15)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
가. 계획 면적

위 치	면 적	비 고
옥수동 산 6번지 일대	37,488㎡ (11,340명)	

나. 토지이용계획

용 도 별	당 초		전 경		비 고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
택 지	27,873㎡	74%	14,950㎡	40%	
도 로	3,048㎡	8	395㎡	1	
녹 지	6,567㎡	18	22,141㎡	59	
계	37,488㎡	100	37,488㎡	100	

나. 가오면경조서

시상명	위	지	당초면적	변경	변경후면적	비고
죽지	옥수산 6-34 478-5	일대	6,567㎡	증15,574㎡	22,141㎡	

라. 가오면경조서

노선명	변경 전				변경 후				비고
	시점	종점	폭	연장	시점	종점	폭	연장	
소 2-1	지구제	지구제	8m	60.6m					폐지
소 3-1	중3	중11	6	365.1					
소 4-1	중12	중11	4	65	죽지	지구제	4	42	일부폐지
소 4-2	지구제	지구제	4	44.1					폐지

(8) 돈암제3구역(5-6) 주택개발 제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
가. 계획면적

위	치	면적	비고
돈암동 6, 9, 11, 80 번지 일대		267,684㎡ (80,974명)	

나. 토지이용계획

용도별	안		면		비고
	면적	비율	면적	비율	
택지	163,662㎡	61%	75,716㎡	29%	
도로	19,450㎡	7	27,670	10	
녹지	84,572㎡	32	160,198	59.3	
공원			4,100	1.7	
계	267,684	100	267,684	100	

누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중 점	폭	연 장	시 점	중 점	폭	연 장	
소 4-12			≡	≡	소 3-4	지구계	4≡	337≡	신 설
소 4-13					소 4-42	소 4-10	4	168	"
소 4-14					소 3-6	소 4-8 소 3-1	4	149	"
소 4-15					소 3-1	소 4-11	4	151	"
소 4-16					소 4-2	소 3-3	4	440	"
소 4-17					소 3-1	지구계	4	76	"
소 4-18					소 3-1	소 4-12	4	56	"
소 4-19					지구계	소 3-3	4	63	"
소 4-20					소 4-41	소 4-28	4	64	"
소 4-21					소 4-23	지구계	4	108	"
소 4-22					소 3-3	소 3-4	4	63	"
소 4-23					"	"	4	44	"
소 4-24					소 4-25	소 4-3	4	41	"
소 4-25					소 4-16	소 3-3	4	42	"
소 4-26					"	"	4	48	"
소 4-27					"	소 4-26	4	57	"
소 4-28					소 3-3	소 4-16	4	80	"
소 4-29					"	소 3-1	4	84	"
소 4-30					"	소 4-31	4	86	"
소 4-31					소 4-29	소 3-2	4	56	"
소 4-32					소 4-6	소 3-1	4	68	"
소 4-33					지구계	소 4-12	4	29	"
소 4-34					소 3-3	소 4-7	4	56	"
소 4-35					소 3-6	소 3-1	4	56	"
소 4-36					소 4-10	녹 지	4	32	"

노선명	변경 전				변경 후				비고
	시점	종점	폭	연장	시점	종점	폭	연장	
소 4-37					소 3-6	소 2-2	4m	30m	신설
소 4-38					지구계	소 2-2	4	69	"
소 4-39					녹지	녹지	4	38	"
소 4-40					소 3-6	소 2-2	4	40	"
소 4-41					소 3-3	소 4-16	4	45	"
소 4-42					소 4-7	소 4-13	4	120	"
소 4-43					소 2-2	74외 87	4	23	"
소 4-44					"	74외 169	4	20	"

(II) 중정구역(6-27)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
가. 계획면적

위	치	면적	비고
중구 합동 545 번지 일대		18,033㎡ (5,455명)	

나. 토지이용계획

용도별	당초		변경		비고
	면적	비율	면적	비율	
택지	14,329㎡	80%	13,114㎡	73%	
도로	3,704	20	3,702	21	
녹지			1,217	6	
계	18,033㎡	100%	18,033㎡	100%	

다. 녹지결정조서

시설명	위	치	당초면적	변경	변경후면적	비고
녹지	중구 합동 545~140 일대		㎡	증 1,217㎡	1,217㎡	

라. 가로변경조서									
노선명	변경 전				변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폭	연 장	시 점	종 점	폭	연 장	
소 4-3	소 4-2	소 4-1	4m	6m	지구계	소 4-1	4m	6m	일부위치변경
소 4-8	지구계	소 4-5	4	90					폐 지
(2) 만리구역 (4-48)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일부변경									
가. 계획 면적									
위 치		면 적		비 고					
중구 만리동 198번지 일대		29,223㎡ (8,840명)							
나. 토지이용계획									
용 도 별	당 초		변 경		비 고				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				
택 지	22,683㎡	78%	23,138㎡	79%					
도 로	6,540㎡	22%	6,085㎡	21%					
계	29,223㎡	100%	29,223㎡	100%					
다. 가로변경조서									
노선명	변경 전				변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폭	연 장	시 점	종 점	폭	연 장	
소 3-1	소 2-1	소 4-3	6m	160m	소 2-1	소 3-2	6m	103m	일부도로축소
소 4-3	소 3-2	소 4-1	4	238	소 3-1	소 4-6	4	263	
소 4-4	소 3-1	소 4-2	4	158	소 3-2	소 4-2	4	70	
소 4-5	소 3-1	소 4-1	4	72	-	-	-	-	폐 지
소 4-13	지구계	소 4-4	4	50	지구계	소 4-4	4	25	
소 4-7					소 4-8	소 4-3	4	60	신 설
소 4-8					소 4-7	소 4-3	4	72	

(13) 아현계 1구역 (7-3) 주택개량개발사업 도시계획 및 일부변경
가. 계획 면적

위 치	면 적	비 고
마포구 아현동 85번지일대	138,857 ㎡ (42,004평)	

나. 토지 이용 계획

용 도 별	당 초		변 경		비 고
	면 적	비 율	면 적	비 율	
택 지	107,789 ㎡	77.6 %	110,926 ㎡	80 %	
도 로	31,068 ㎡	22.4 "	26,462 "	19 "	
녹 지			1,469 "	1 "	
계	138,857 ㎡	100 %	138,857 "	100 "	

다. 녹지 결정조서

시설명	위 치	당초면적	변 경	변경후면적	비 고
녹 지	마포구 아현동 59번지부근	㎡	증 1,469 ㎡	1,469 ㎡	신 설

라. 가로 변경조서
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폭	연장	시 점	종 점	폭	연장	
소 3-1	소 3-5	2-1	6 ㎞	236 ㎞	소 3-5	소 4-44	6 ㎞	135 ㎞	
3-2	소 2-1	3-6	"	160 "	소 2-1	소 3-6	"	163 "	
3-3	소 2-2	소 2-1	"	208 "	소 2-2	지구계	"	109 "	

40-32

제 600 호

시

보

1977.3.29
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폭	연장	시 점	종 점	폭	연장	
3-6	소 3-5	지구계	6m	400m	지구계	지구계	6m	270m	
3-7	소 2-2	"	"	180"	소 2-2	소 4-45	"	72m	
소 4-1	소 2-2	"	4m	192"	소 2-2	지구계	4m	190m	
4-2	소 4-2	소 4-8	"	110"	소 4-42	"	"	89m	
4-3	소 4-3	소 4-1	"	190"	소 4-42	소 4-1	"	61m	
4-4	소 2-2	지구계	4m	55"					폐 지
4-5	소 4-5	소 4-4	"	180"					"
소 4-6	소 4-5	소 4-3	"	60"			4m		"
4-7	지구계	소 4-4	"	86"			"		"
4-8	소 3-7	소 4-3	"	72"			"		"
4-9	소 2-2	소 4-8	"	64"			"		"
4-10	소 2-1	소 4-15	"	124"	소 2-1	소 4-15	"	127m	
4-12	소 4-13	지구계	"	170"	소 4-13	지구계	"	192m	
4-13	소 4-17	"	"	172"	소 4-17	"	"	161m	
4-14	소 2-1	소 3-3	"	96"	소 2-1	소 3-3	"	94m	
4-15	소 2-1	소 2-2	"	122"	소 2-1	소 2-2	"	119m	
4-16	소 2-2	소 4-12	"	72"	소 2-2	소 4-12	"	89m	
4-17	소 4-13	소 2-2	"	80"	소 4-13	소 2-2	"	92m	
4-18	소 4-10	소 4-12	"	46"	소 4-10	소 4-12	"	50m	
4-19	소 3-1	소 2-24	"	126"	85-711	소 4-24	"	89m	

노선명	변 경 전				변 경 후				비 고
	시 점	종 점	목	연장	시 점	종 점	목	연장	
4-20	소 4-22	소 4-21	4	74	소 4-22	소 4-21	4	76	폐 지
4-21	소 3-1	소 2-1	"	166	소 3-1	소 2-1	"	162	
4-22	소 3-1	소 4-24	"	80	소 3-1	소 4-19	"	86	
4-23	지 구 계	소 3-1	"	32					
4-24	소 3-1	소 3-1	"	136	소 2-1	소 3-1	"	149	
4-25	소 4-43	소 3-2	"	50	소 4-43	소 3-2	"	78	
4-26	소 4-21	소 3-2	"	64	소 4-21	소 3-2	"	77	
4-27	소 3-2	소 2-1	"	46	소 3-2	소 2-1	"	37	
4-28	소 3-2	소 "	"	96	소 3-2	소 2-1	"	97	
4-30	소 4-31	소 3-2	"	90	소 4-31	소 3-2	"	98	
4-31	소 3-6	소 2-1	"	62	소 3-6	소 2-1	"	64	
4-33	소 4-43	소 3-6	"	10	소 3-6	소 3-6	"	65	
소 4-34	소 4-33	소 3-2	"	31	소 4-33	소 3-2	"	41	
4-35	소 4-36	소 3-1	"	51	소 4-36	소 3-1	"	54	
4-36	소 3-4	소 3-5	"	40	소 3-4	소 4-17	"	40	
4-37	소 3-1	지 구 계	"	110	소 3-1	지 구 계	"	105	
소 4-38	소 4-36	소 3-5	"	45					
4-39	소 2-1	소 4-13	"	24	소 2-1	소 4-13	"	28	
4-42	소 4-2	소 4-7	"	94	소 3-7	지 구 계	"	105	
4-43	소 3-5	소 3-6	"	90	소 3-5	소 3-6	"	88	
4-44					소 3-1	소 2-1	"	100	
4-45					소 3-7	지 구 계	"	108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90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- 1. 건설부고시 제 177 호 (62.12.8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- 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- 3.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.

1977.3.30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의 위치 : 종로구 신문로 1가 146의 1 ~ 평동 205
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광화문~ 서대문간도로확장 공사

- 3. 사업규모 : B = 40 m L = 1,100 m
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- 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77.1.4 ~ 78.6.30

- 6.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
- 7.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토지조서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7 호

공인개각사용공고

관악구청 공인(직인, 제인)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이원 개각 공고한다.

- 1. 공인개각사용 및 폐인일자 :

1977.3.15 09: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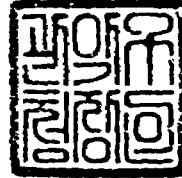
- 2. 개각사용 및 폐인의 공인명 및 인영 :

1977.3.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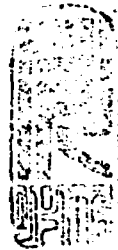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공 인 개 자 신 구 인 영

인명 : 관악구청 직인 1977. 3. 15 변경



인명 : 관악구 제인 1977. 3. 15 변경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1 호

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

- 1. 영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제 47조 및 동법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람에 공한다.
- 2.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

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도입니다.

- 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 것이나, 미수행 되는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.

1977. 3. .

서울특별시장

환지계획변경내역

가. 사업명 :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5,704 평
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 서초동 산 182
의 2호의 5필

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
잠류함.

1977. 3.

서울특별시

공 랑 개 요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2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
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제 177 호 (62.12.8)로
고시된 고려병원~독립문간 도로확
장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
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
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
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
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
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
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3.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
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

1. 사업장위치 : 종로구 신문로 2 가
6의 4 ~ 홍파동 36의 1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고려병원~
독립문간 도로확장공사

3. 사업의 규모
가. B = 12 m
나. L = 580 m
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
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:
1977.2.1 ~ 1977.6.30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토지조서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주소·성명 :

토 지 조 서						
지 번	지 목	평 수	등 급	주 소	성 명	
신문로 2가 6-4	녀	9.2	71	척운동 15-17	계 인 옥	
5-9	"	4.2	69	5-4	김 중 현	
5-8	"	0.6	"	5	임 상 복	
4-12	"	2.9	"	2-5	주 영 득	
4-11	"	13.5	"	필운동 155	김 동 한	
4-13	"	1.4	"	성북동 88	윤 봉 기	
2-70	"	3.0	"			
2-69	"	5.1	69	서울특별시		
평 동 62-3	"	2.7	66	고려병원(주)		
62-1	"	2.4	"	"		
60-2	"	8.3	"	"		
57-4	"	0.6	"	57	김 태 국	
56-3	"	5.5	"	53	황 정 순	
54-2	"	0.1	"	"		
53-2	"	1.8	"	"		
51-2	"	10.1	"	국		
35-4	"	0.8	"	35-1	신 임 식	
35-1	"	10	"	"		
34	"	10.	"	34	양 재 두	
33	"	9.1	"	39	최 영 덕	

지	번	지목	면 수	등급	주 소	성 명
평	동 39	대	4.6	66	39	동남제약(주)
	31	"	6.3	"	31	이인식
	30	"	7.8	"	30	김형순
	29	"	7.2	"		근규창
	27	"	11	65	28-1	민병일
	27-4	"	7	66	"	"
신문로 2가	3-6	"	7.1	69	성북동 88	윤봉기
평	동 26-1	"	28	65	26-1	홍용래
	26-40	"	0.2	"	26-22	곽경성
	26-21	"	11.2	"	6-21	유재국
	26-5	"	11.9	"	26-5	김원작
송월	동 144-2	"	13.9	"	144-2	김희주
	143-2	"	11.5	70	137	정성업
	137	"	1.4	66	"	"
	142-2	"	4.3	65	142	이재관
	141-2	"	2.5	66	141	김완수
	100	"	1.2	65	100	이건희
	99-1	"	7	"	교남동 61	임들이
	99	"	19.1	"	"	"
	98-5	"	0.5	"	서울특별시	"
	98-1	"	27	"	국	"
	32-1	"	39.6	"	재단법인대한성서공사	"
	32-6	"	50.3	"	다동 18-3	정애

지 번	지 목	면 수	등 급	주 소	성 명
중로구 송월동 32-44	대	0.5	65	한남동 746-6	김 재 만
32-45	"	0.2	"	32-7	김 순 이
25-3	"	0.2	"	과철동 84	임 백 결
25-4	"	2.7	"	"	
24-5	"	5.9	"	24-5	이 재 윤
21-3	"	7.3	"		박 은 성
20-3	"	3.9	"	20-2	이 준 기
20-2	"	1	"	"	
19-2	"	9.7	"	충주 호암리 182-1	이 정 근
18-3	"	4.6	64	8	김안식. 허정순
13-1	"	12	"	13	수 한 후
12-2	"	7.2	"	아현동 347-26	박 한 영
8-3	"	0.4	"	8	박 학 성
8-2	"	8.7	"	"	
7-3	"	12	"	7-2	이 장 표
6-3	"	9.3	"	6-2	심 원 광
5-1	"	9.8	"	5	김 명 련
4-1	"	12	"	4	오 기 환
3-4	"	17.5	"	3-1	성 송 근
3-5	"	19.4	"	3-2	장 멀 회
3-6	"	22.5	"	영동1지구 4-1	장 동 언
2-48	"	46.4	"	서울특별시	
중로구 홍파동 154-3	"	39.1	"	155	최 인 덕
153-2	"	10	65	153-2	한 래 석

지 번	지 목	평 수	동 급	주 소	성 명
중로구룡파동 155-2	대	3.7	65	155	최인덕의 2인
152-7	"	10.7	"	152-2	안 재 근
152-1	"	15	"	152	조 용 식
151	"	15.7	"	교 북 동 51	이 시 준
150-2	"	14.5	68	150-2	서 상 열
38-3	"	3.8	67	38-2	임 정 복
38-2	"	4.2	"	"	"
40-1	"	3.4	69	40-1	홍 중 선
36-3	"	7.4	67	36-1	이 중 열
13-11	"	0.4	64	13-5	박 원 순
12-7	"	1.8	63	12-4	이 중 원
11-4	"	1.2	"	11-1	이 피 선
10-20	"	3.8	"	10-14	박 중 학
8-4	"	10	"	3-2	이 부 섭
8-5	"	0.3	"	공 덕 동 369-62	송 중 기
신문로 2가 6-5	"	4.9	69	원 산	업
7-49	"	1.1	"		
평 동 26-41	"	1	65		
27-5	"	0.4	"		

사 령

© 1977.3.25

영 등 포 구 송기 선
 지방행정서기
 전라북도 진출을 명함.

© 1977.3.29

행정 과 백운학
 지방행정주사보시보
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중 구 조경호
 지방행정사무관
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
 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
 해제함.

서울특별시